

이 보도자료는 4. 9.(목)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0. 4. 9. (목)

자료문의 : 대검 형사2과  
전화번호 : 02-3480-2270  
주책임자 : 형사2과장

제 목

##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20. 4. 9.(목)부터 전국 검찰청에 실시하였음
- 새로 제정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
  - ②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 ③ 소지 사범에 대하여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

## 1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 행위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
-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과 처벌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에 대하여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 2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 가. 강화된 처리기준 적용 대상

- ①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②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 등과 불법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
-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여 기존의 사건처리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

※ 이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또는 다른 범죄가 결부되지 아니한 성인에 대한 일반 비동의 촬영물은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 또는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

### 성착취 영상물 범죄 예시

- ▶ 조건만남(소위 ‘스폰서’) 제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 받은 후 이를 유포하는 행위
- ▶ 기 획득 한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적인 행위를 연출한 영상물을 찍게 하여 전송 받는 행위
- ▶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 ▶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임을 알면서 전송받아 소지, 유포하는 행위

## 나. 주요 내용

### 제작사범

- **범행방법(조직적, 개별적)과 가담정도(공범, 방조범), 피해자 유형(아동, 성인), 동종 전과 등 불문, 전원 구속 원칙**
  - **(조직적 제작사범)**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
  - **(개별적 제작사범)**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

#### [사례]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음란물 촬영한 경우

〈 기존 기준 〉	〈 강화된 기준 〉
5년 이상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토록 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

### 유포사범

- **영리목적 유포사범은 전원 구속 원칙, 일반 유포사범도 동종 전력,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의 경우 구속원칙**
  - **(영리목적 유포)** 영업적으로 유포한 사범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에 대한 피해 야기 등 죄질 불량시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 적극 구형
  - **(일반 유포)** 그 외 일반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사례] 공유방에 참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

〈기존 처리기준〉	〈강화된 기준〉
징역 2년 이상	최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10년 이상 적극 검토

### 소지사범

- **영업적 유포를 위한 소지·운반사범이나, 동종 3범 이상 일반소지 사범도 구속 적극 검토**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엄벌로 범죄수요 차단 도모
  - (영리목적 소지·운반) 징역 2년 이상 구형
  - (일반 소지) 동종 재범 또는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구공판 및 징역 6월 이상 구형, 초범도 벌금 500만원 이상 ※ 소위 ‘관전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
  - 초범인 소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하고, 성인의 경우 기소유예를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벌

[사례] 초범인 성인이 공유방 참여하여 아동성착취물 1~2개 소지한 경우

〈기존 기준〉	〈강화된 기준〉
통상 기소유예 처분	벌금 500만원 이상 (기소유예 불가)

[사례] 초범인 성인이 다량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한 경우 또는 동종 재범

〈기존 기준〉	〈강화된 기준〉
구약식 (벌금 100만원 ~ 500만원)	구공판 (6월 이상)

## 3 향후계획

- 2020. 4. 9.(목)부터 전국 검찰청 시행
-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 등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 ☒

**(별첨) 현행법상 성착취 영상물 범죄 관련 처벌규정**

법률	적용 법조	세부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 처벌법	§14	카메라등이용 촬영	제1항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 3,000만원 ↓
			제2항 : 제1항의 촬영물 및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동의하에 촬영 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	5년 ↓, 3,000만원 ↓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및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7년 ↓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11 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등	제1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 5년 ↑
	§11 ②		제2항 :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 배포·제공, 소지·운반, 전시·상영	10년 ↓
	§11 ③		제3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 전시·상영	7년 ↓, 5,000만원 ↓
	§11 ④		제4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년 ↑
	§11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 영리목적 소지는 제2항	1년 ↓, 2,000만원 ↓	
정보 통신망법	§74① 제2호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 전시	1년 ↓, 1,000만원 ↓
성매매 처벌법	§18① 제4호	성매매강요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 상물 등을 촬영	10년 ↓, 1억 원 ↓